

남 해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625호 2018. 12. 28.(금)

훈 령

남해군 훈령 제320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 등 규정 일괄개정규정 1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해군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860-3045, 행정 3045)

훈 령

남해군 훈령 제320호

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 등 규정
일괄개정규정

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 등 규정 일괄개정규정을 발령한다.

2018년 12월 21일

남 해 군 수

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 등 규정
일괄개정규정

제1조(「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3조제1호 중 “실과” 를 “부서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실과소” 를 “부서” 로 하고, “기획팀장” 을 “정책기획팀장” 으로 한다.

남 해 군 공 보

(2) 제 625 호

2018년 12월 28일

제6조 중 “실과소” 를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하고, “실과소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 으로 한다.

제7조, 제9조 중 “실과소” 를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한다.

제8조 중 “기획팀장” 을 “정책기획팀장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실과소” 를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한다.

제2조(「남해군 군수 선거공약 관리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군수 선거공약 관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, 제7조, 제8조,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3조(「남해군CIP관리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CIP관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실과소” 를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한다.

제3조제5항, 제4조제2항, 제5조 중 “문화관광과장” 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4조(「남해군공보발행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공보발행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기획감사실” 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 으로 하고, “실·과·직속기관” 을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실·과·직속기관” 을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하고,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실·과·직속기관실” 을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한다.

제5조(「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13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추천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삭제한다.

제6조(「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7조(「남해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남해군 일상감사 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일상감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, 제6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, 제9조, 제10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직속기관(보건소, 농업기술센터)”를 “직속기관 및 사업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실과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예산경영팀장”을 “예산팀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실과소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실·과·소장”은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으로 하며, “실·과·소”를 “관·과·소”로 하고, “실과”를 “담당관·과·소”로 한다.

제22조, 제23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실·과”를 “담당관·과·소”로 한다.

별표2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실과소”를 “담당관·과·소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남해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‘청경의 배치부서·근무장소 및 임무’ 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3조(「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실과” 를 “담당관·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실과단” 을 “담당관·과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4항,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실과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” 으 로 한다.

제14조(「남해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행정서비스헌장제 정및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실과소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 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자치행정과장” 을 “행정과” 로 하고, “실과소장” 을 “담당관·과 장·소장” 으로 한다.

제15조(「남해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운영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행정서비스헌 장심의위원회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민원봉사과장, 행정과장” 을 “행정과장, 민원봉사과장” 으로 한 다.

제16조(「남해군보안업무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보안업무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실·과·단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경제과장” 을 “지역활성과장” 으로 하고, 같은조 같은항제 4호 중 “후생복지팀장” 을 “후생팀장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, 제9조제1항 중 “실·과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실·과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” 으로 하고, “실·과·소” 를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하며, “부서(재난안전과 등)로” 를 “부서에” 로 한다.

제12조, 제23조 중 “실·과·소” 를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실과” 를 “담당관·과” 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실·과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” 으로 한다.

제34조제3항 중 “실과” 를 “담당관·과” 로 한다.

제17조(「남해군행정자료실운영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행정자료실운영규정」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행정과장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실·과장” 을 “담당관·과·소장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실과” 를 “담당관·과·소” 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자치행정과” 를 “행정과” 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실과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 으로 한다.

제18조(「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실과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실과장과 직속기관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 으로 한다.

제19조(「남해군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제1항 중 “수산지도팀장” 을 “어업지도팀장” 으로 한다.

제20조(「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교통행정 팀장” 을 “교통지도팀장” 으로 한다.

제21조(「남해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·운영 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·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실과장” 을 “부서장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재난관리과장” 을 “안전총괄과장” 으로 하고, “실과소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 으로 한다.

제22조(「남해군 재난 예·경보 운영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재난 예·경보 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9조, 제10조 중 “재난관리과장” 을 “안전총괄과장” 으로 한다.

제23조(「남해군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」의 개정) 「남해군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 중 “재난관리과장” 을 “안전총괄과장” 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발령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개정 전 부서명 및 직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부서명 및 직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2호서식] <제7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규정 개정 관련>

남해군명예감사관증

NO.

남 해 군 명 예 감 사 관 증

주 소 :
성 명 :
생 년 월 일 :

사 진
(3.5×4.5)

위 사람은 남해군 명예감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의
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사관임을 증명함.

년 월 일

남 해 군 수

<전 면>

가로 8.5cm, 세로5.5cm

주 의 사 항

1. 이 증은 남해군 명예감사관에서 해촉 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.
2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3. 이 증을 휴대한 명예감사관 또는 임무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으로(☎055-860-3052)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후 면>

[별표 2] < 제10조 법무행정행정처리규정 개정 관련 >

심 사 필	기 획 예 산 담 당 관
	실 인

4.0cm

1.5cm

[별표 1] <제12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개정 관련>

청경의 배치부서 · 근무장소 및 임무

배치부서	근무위치	주요 임무	비고
행정과	군청 본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사 경비 및 방호 - 시설물 경비 및 방범·방호·방화 활동 - 출입 차량 검문검색 및 주차질서 계도 - 불순분자, 난동자, 잡상인 등의 출입통제 - 민원인 및 방문객 안내 	
문화청소년과	평생학습관		
주민복지과	종합사회복지관		
상하수도사업소	상하수도시설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사 경비 및 방호 - 시설물 경비 및 방범·방호·방화 활동 - 출입 차량 검문검색 및 주차질서 계도 - 불순분자, 난동자, 잡상인 등의 출입통제 - 민원인 및 방문객 안내 ○ 정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경비 - 시설물 경비 및 방범·방호·방화활동 - 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 -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행위 감시 	
건설교통과	군청 별관 · 교통시설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사 경비 및 방호 ○ 도로·교량·교통시설물 안전 경비 	
관광진흥담당관	문화·관광·시설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·관광 시설물 경비 - 시설물 경비 및 방범·방호·방화 활동 - 출입 차량 검문검색 및 주차질서 계도 - 불순분자, 난동자, 잡상인 등의 출입통제 - 시설물 관람 안내 	